

## 제20장 일반 규정 및 예외

### 제20.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11장(지식재산권) 및 제14장(농림수산협력)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 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8장(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9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및 제10장(투자)의 목적상, GATS 제14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상, 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양 당사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국가적 작품 또는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데 필요하거나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적 가치를 가진 창작 예술<sup>1</sup>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0.2조 안보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도록 요구하는 것

---

<sup>1</sup> “창작 예술”은 공연예술(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한다),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영화 및 비디오, 언어 예술,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도자적 전통 관습 및 현대적 문화 표현물, 디지털 양방향 매체, 그리고 개별 예술형식 분류의 초월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혼성예술 작품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예술의 발표, 수행 및 해석에 수반된 활동과 이러한 예술 형태 및 활동의 기술적 진보와 연구를 포괄한다.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과 재료에서의 그러한 거래와 관련되거나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되는 조치
- 2) 전시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지는 조치, 또는
- 3)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와 그 종료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 제20.3조 국제 수지 보호 조치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와 대외 재정상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 지급 및 자본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 정책 또는 환율 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상품 무역의 경우에는, 1994년도 GATT 및 세계무역기구의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수입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체적 약속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또는

다.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로부터의 수익의 송금에 관련된 지급에 관하여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은,

가.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및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라. 일시적이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 마.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한쪽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다른 쪽 당사국과 사전에 조율할 것이다. 그리고
- 바.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다른 쪽 당사국은 모든 비당사국에 비해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경제적 발전에 더욱 필수적인 경제적 영역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특정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제한 또는 제한의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5.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 또는 조치의 연장에 관하여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한다.

### 제20.4조 건전성 조치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를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또는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 제20.5조 과세 예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조치와 관련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가. 제2.3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나. 제2.12조(수출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 제8.4조(내국민 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 또는 투자나 재산의 가치<sup>2</sup>(다만, 그 투자나 재산의 이전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sup>3</sup>

라. 제8.4조(내국민 대우), 제8.5조(최혜국 대우), 제10.5조(내국민 대우) 및 제10.6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 투자나 재산의 가치<sup>4</sup> (다만, 그 투자나 재산의 이전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조치 또는 상속, 유산취득, 증여 및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조세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 언급된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나.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다.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라. 개정 시점에서 그 개정이 위의 조들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에 대한 개정

마. 거주지 또는 설립지에 기반하여 인들을 구별하는 과세조치를 포함하여,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sup>2</sup> 이는 양 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투자나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이 호의 적용대상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이 호에 언급된 조세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이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sup>4</sup> 이는 양 당사국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투자나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론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는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다만, 그 과세조치가 양 당사국의 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sup>5</sup> 또는

바. 연금신탁, 퇴직기금, 또는 연금, 퇴직연금 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약정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러한 신탁, 기금 또는 그 밖의 약정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 규제 또는 감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4. 제2항가호 및 나호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제10.11조제2항부터 제10.11조제4항까지의 규정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10.9조(수용 및 보상)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0.9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0.9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제10.20조(중재청구 제기)에 따라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것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10.20조(중재청구 제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6.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조의 목적상, “조세협약”이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양 당사국 간에 시행 중인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을 말한다.

8.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조세협약이 우선한다.

9.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10. 이 조의 목적상, 과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1.5조(정의)에 규정된 관세

나. 제1.5조(정의)에서 관세의 정의의 예외 나호 및 다호에 기재된 모든 조치, 또는

---

<sup>5</sup> 양 당사국은 이 항이 GATS 제14조라호가 서비스 또는 직접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GATS 제14조라호의 주석을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양해한다.

다. 수입관세

**제20.6조  
와이탕이 조약**

1. 그러한 조치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마오리족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뉴질랜드가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와이탕이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와이탕이 조약의 해석이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9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달리 적용된다. 제19.8조(중재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와 불합치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한국에 의하여 요청받을 수 있다.

**제20.7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정보의 공개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금융기관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자국의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
- 다. 법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 또는
- 라. 특정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20.8조  
비밀유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정보를 받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그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명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사법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공개나 이용이 정보를 받는 당사국의 국내 법적 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허가 없이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